

의안번호	2207721
의 퇴 인	신성범 의원
회 답 일	2025. 3. 14.
추 계 번호	25B04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법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촉진 외에 위치정보 산업 진흥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¹⁾)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제²⁾)로 구분
 - 개정안은 현행 사업자 분류체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등록제로,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 중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및 위치정보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의무규정
3	안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음.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재량/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수·상속·합병·분할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과 휴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5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4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30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의무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및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제공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항)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의무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제공의무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제7항)	재량/의무 규정
9	안 제35조(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함(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3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1	안 제37조(표준화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름(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12	안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정에 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할 수 있음(제2항)	
13	안 제39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위치정보사업 및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과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개정안의 조문 중 현행 조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래의 조문은 향후 정책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7조(표준화의 추진)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9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의 조문별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변경·폐업 등의 업무는 현행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수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td><td>위치정보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 및 상담</td><td>215</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 및 상담	215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 및 상담		215					
2	안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3	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	안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5	안 제35조(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위한 현행 예산이 존재 - 동 조사가 2024.9. 국가승인통계(제164005호)로 승인되어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 예산소요가 존재하나, 이는 현행 규정에 따른 예산소요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아님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 </thead> <tbody> <tr> <td>위치정보 산업활성화 지원</td><td>국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td><td>50</td></tr> <tr> <td>-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조사</td><td></td><td></td></tr> </tbody> </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위치정보 산업활성화 지원	국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0	-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조사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위치정보 산업활성화 지원	국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0									
-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조사											
6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2. 상세 사유

□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대상으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항은 위치정보산업 진흥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안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개정안의 조문 중 현행 조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문은 향후 정책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 및 신고 현황('24년말 기준)

구 분		~2018 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위치 정보 사업	개인 (등록)	144	12	32	38	40	30	25	321
	사물 (신고)	3	10	7	7	13	7	12	59
	소계	147	22	39	45	53	37	37	380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개인 (신고)	899	94	122	126	154	149	202	1,746
	소상공 인등 (신고)	12	75	119	142	132	112	165	757
	소계	911	169	241	268	286	261	367	2,503
합 계		1,058	191	280	313	339	298	404	2,883

주: 폐업 사업자 수는 제외

자료: 방송통신위원회